

로부터 1997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사안으로, 조기교육과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서울교육상의 각 부문별 균형있는 시상을 도모하고자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부문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기 위하여 시상부문에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교육상의 시상부문 중에서 초등교육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유아교육부문을 유아·특수교육부문과 초등교육부문으로 분리 독립토록 하여 현행 4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이의 시상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97년 5월 9일 제94회 임시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제3조 시상부문 중 제1호 유아·특수교육부문 1명을 제1호 유아교육부문 1명과 제2호 특수교육부문 1명으로 하고, 제2호를 제3호, 제3호를 제4호, 제4호를 제5호, 제5호를 제6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서울特別市教育價條例中改正條例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증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를 제3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유아·특수교육부문”을 “유아교육부문”으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수교육부문 1명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초등교육부문(유아교육부문포함)”을 “초등교육부문”으로 하여 동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아교육부문 1명  
2. 특수교육부문 1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서울特別市都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都市整備委員會 委員長 提案)

9.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都市整備委員會 委員長 提案)

(14時 40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特別市都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9항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이 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도시정비위원회 李成浩議員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成浩議員 안녕하십니까? 종로 제1선거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李成浩議員입니다.

본의원이 文一權 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94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特別市都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과 동료의원인 具哲會議員이 발의한 서울特別市建築條例仲改正條例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都市再開發事業條例仲改正條例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결정사항의 세부기준을 정한 都市再開發事業條例 제7조제1항제4호에는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가 都市計劃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즉, 도시계획구역 및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서 그